#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91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최은석·김종양·유용원

이종배 • 서일준 • 이인선

정희용 • 이달희 • 김위상

송언석 · 정연욱 · 박정하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한편,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한시험·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,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 한편, 이러한 논의에 따라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은 2024년 2월 개정을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까지로 정하고,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

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,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10항 중 "2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제10조의6제9항 본문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유효기간을"을 "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제특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6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의3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)	제10조의3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)		
① ~ ⑨ (생 략)	① ~ ⑨ (현행과 같음)		
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<u>2년</u>	⑩ <u>4년</u>		
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			
위원회가 정한다.			
① ~ ④ (생 략)	① ~ ⑭ (현행과 같음)		
제10조의6(임시허가) ① ~ ⑧	제10조의6(임시허가) ① ~ ⑧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<u>2년</u>	⑨ <u>3년</u>		
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			
위원회가 정한다. 다만, 유효기			
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			
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・			
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			
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			
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	<u>2</u>		
<u>유효기간을</u> 1회 연장할 수 있	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		
다.	<u> </u>		
⑩ ~ ⑮ (생 략)	① ~ ① (현행과 같음)		